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1997. 11. 14.

수 신 각 참여단체 담당자
발 신 김기중(전화 : 567-2316, 팩스 : 568-3439)
제 목 **긴급 확대회의 결과**

1. 상황보고

- 11. 13. 오전 국회 내무위 법안심사소위, 자민련측 참가자의 찬성으로 통과,
- 11. 13. 오후 내무위원회, 신한국당, 자민련 의원들의 찬성으로 표결통과
- 11. 14. 오전, 공대위 성명서 발표
- 11. 14. 12:00, 명동성당앞 피켓팅(20여명 참석)
- 11. 14. 오후
  . 자민련의 당론이 내무부의 수정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변경(이 사실을 뒤늦게 확인)
  . 전화회의를 통하여 11. 17. 오전 10시에 국회앞에서 시위하기로 결정
  . 국민회의, 자민련 지도부와 면담 요청 : 국회일정의 촉박하여 실패
  . 18:30에 열리는 국민회의 총재와 정권교체국민위원회 사이의 만찬석상에서 전자주민카드 문제를 제기하도록 참가하는 인사들에게 요청
  . 전화상으로 몇 몇 국민회의 의원들에게 이번 일은 DJP연합의 한계와 문제점의 결과라는 점을 지적하고, 이 문제가 시정되지 않으면 시민사회단체는 DJP연합의 긍정적 효과는 전혀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였음.
  . 법률소비자연맹의 성명서 발표, 전북공대위 성명서 발표

2. 논의결과

- 국회 본회의의 통과를 저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는 것이 현실적임. 따라서 정기국회 이후의 전자주민카드 발급거부운동을 대비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활동을 벌여야 함.

- 이번 일은 그동안 공대위 내부의 힘을 키우지 못한 것에 기인함. 전자주민카드 발급거부운동은 더욱 큰 싸움이 될 것인데, 현재 내부의 역량으로는 힘든 면이 있음.

- 따라서 월요일(11. 17.)에 있을 국회앞 시위에 공대위의 모든 역량이 투자되어야 함.

- 시민사회단체는 그동안 정권교체가 그 자체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을 인정하고 DJP연합에 적극적인 비판을 제기하지 않고 있으나, 영장실질심사제 후퇴와 전자주민카드제도에 국민회의가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못하고, 자민련은 오히려 위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의 정권교체가 사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점이 앞으로는 강력하게 지적되어야 할 단계로 보임.

3. 결정사항

- 11. 15.(토) 오전 10시 신한국당과 자민련 항의방문

: 10시에 국회 정문쪽 장기신용은행앞에 집합. 이 연락을 받은 모든 사람은 가능하면 항의방문에 동참해 주기 바람.

그나마 국회 본회의에서의 통과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민련의 태도를 바꾸는 것으로 보임. 자민련의 태도를 바꾸기 위하여 여러 경로를 통하여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이므로, 그 외의 좀 더 강한 압박이 필요한 상태임. 피켓 등은 정보연대와 천주교인권위에서 준비할 예정임.

- 11. 17(월) 오전 10시 국회앞 시위(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대시위와 동시 진행함) : 모든 소속단체는 가능한 한 모든 사람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람. 끝.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과학부 담당기자 · 사회단체
발 신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담당 : 참여연대 이대훈 723-5300)
제 목 주민등록법 개정 국회통과에 대한 긴급성명
날 짜 1997.11. 13(총 2쪽)

성 명 서

주민등록 사항 수록 전자주민카드 위험성은 여전
-주민등록법 개정 국회통과에 대한 긴급성명-

일시: 97. 11. 13(수)

국회 내무위가 11. 13. 전자주민카드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고 우리는 내무위원들의 단견과 무지에 놀라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수정된 전자주민카드제도는 애초에 계획되어 있던 의료보험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외하고 현행 주민등록증에 수록되어 있는 사항과 주민등록등초본에 수록되어 있는 사항, 병역사항, 지문을 수록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정된 제도는 IC카드의 수록사항에서 몇 가지 빠진 것외에 전자주민카드의 본질적인 문제를 그대로 안고 있어, 눈가리고 아웅식의 방책에 불과하므로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전자주민카드가 위험한 이유중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컴퓨터 칩(IC칩)을 사용한다는데 있다. 국가관리사회는 전 국민에게 소규모 컴퓨터 역할을 하는 전자카드를 지급함으로써 도래할 수 있는 것이지, 전자카드의 수록내용이 많기 때문이 아니다. 수정되기 전 전자주민카드 계획의 핵심적인 용도는 전자적인 방식의 신분확인에 있었고, 운전면허증과 의료보험증의 기능은 사실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였다. 부수적인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전자주민카드의 위험성이 증폭된다는 비판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수정된 전자주민카드 계획에 의하여도 전자적 방식으로 신분확인을 하는 핵심적 기능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위험성은 여전하다.

수정된 전자주민카드 제도의 필요성은 대부분 상실되었거나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초본만을 전자카드에 수록한다면, 왜 '전자적 방식'으로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보험회사, 은행 등의 민간기업이 신용카드 판독기보다 5배이상이 비싼 전자주민카드 판독기와 출력기를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할 가능성이 아주 작기 때문에, 주민등록등초본을 동사무소에 직접 가서 발급받아야 하는 일은 거의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국회 공청회 자리에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전자주민카드 계획은 정부계산만 2,700여억원이 필요하며, 부대시설비용, 관련자 교육비용, 이용자교육비용, 사회적용비용 등까지 감안하며 훨씬 많은 비용이 필요한 사업이다. 그런데 주민등록등초본만을 수록하겠다는 수정된 제도로는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미 많이 지적되었듯이 호주나 영국에서도 한때 시행하려던 전자신분증 발급계획의 초기비용을 이후에 2배이상으로 조정한 사례가 있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광범위한 여론수렴없이는 어떠한 형태의 전자주민카드 제도도 도입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아직 첨단 과학기술이 내포하는 위험과 사회적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아주 낮은 상태이다. 그동안 과학기술시스템은 정부와 과학부문의 엘리트 사이의 폐쇄적인 의사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야기해 왔다. 여론수렴없이 추진한 쓰레기소각장 정책에 의하여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경제성이 없고, 다이옥신이라는 환경침해요소 내포), 경부고속철도의 문제가 대표적이다. 따라서 기술영향평가, 경제적 타당성 평가, 사회영향평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중립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의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된다 이러한 과정을 모두 생략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어떠한 명분에도 불구하고 전자주민카드 제도에 관한 근거법률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루어져서는 아니되며, 각 당은 이같은 여론을 반영하여 국회내무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즉각 번복할 것을 촉구한다. 끝

97. 11. 13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통합전자주민카드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보호를 위한 광주전남지역공동대책위원회

우)501-71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3-5 가톨릭센타 608호 전화:062)227-6008 전송:062)225-1306

시행일 : 1997년 11월 14일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과학부 담당기자
발 신 :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담당 : 정의평화위원회 전경진 227-6008)
제 목 : <주민등록법 개정안> 국회 내무위 통과에 대한 긴급성명

주민등록 사항만 수록한 수정된 전자주민카드의 위험성은 여전하다!

- <주민등록법 개정안> 국회 내무위 통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

11월 13일 전자주민카드 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 내무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우리는 내무위원들의 성급하고 무책임한 행동에 놀라움과 분노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전자주민카드에 수록될 사항을 대폭 축소했다는 내무부의 수정안은 몇몇 부수적인 수록사항만 제외시킨 채 전자주민카드가 갖는 본질적인 문제를 그대로 내포한 것이며, 이는 어떻게든 전자주민카드 제도를 통과시키기 위한 얄팍한 술수에 불과한 것으로 따라서 이를 즉각 철회해야 마땅하다.

전자주민카드가 위험한 이유 가운데 핵심은 컴퓨터 칩에 있다.

총체적 국가관리사회는 전 국민에게 소규모 컴퓨터 역할을 하는 전자카드를 시급함으로써 도래할 수 있는 것이지 전자카드의 수록내용이 많기 때문은 아니다. 기존 전자주민카드 계획의 핵심용도는 전자적인 방식의 신분확인에 있었고, 운전면허증과 의료보험증의 기능은 사실상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였다. 그 동안 공청회에서 전자주민카드를 반대하는 학자들의 의견은 신분확인의 전자화에 대한 문제제기였지 의료보험증, 운전면허증을 통합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는 아니었다. 따라서 컴퓨터 칩을 제거하지 않는한 전자주민카드의 위험성은 여전한다.

수정된 전자주민카드의 필요성은 대부분 상실되었다.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초본만을 전자카드에 수록한다면, 우리는 왜 '전자적인 방식'으로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주민등록등초본을 요구하는 기관에 대하여 그 현장에서 전자주민카드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려는 취지인 듯 하지만 보험회사, 은행 등 민간기업

이 신용카드 판독기보다 5배 이상 비싼 전자주민카드 판독기와 출력기를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할 가능성은 별로 없으며, 주민등록등초본을 동사무소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하는 수고는 거의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국회 공청회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따라서 우리가 누차 주장하였듯이 현재와 같이 무분별한 주민등록등초본을 요구하는 관행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관건이다.

경제적 타당성도 없다.

전자주민카드 계획은 정부 계산만으로도 2,700여억 원이 필요하며, 부대시설비용, 관련사 교육비용, 이용자 교육비용, 사회적응비용 등을 감안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주민등록등초본 사항만 추가로 수록하겠다는 수정된 내용은 따라서 경제적 타당성도 없다고 보아야 한다. 호주나 영국 등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한때 시행하려던 전자신분증 발급계획의 초기비용을 이후에 2배 이상 조정하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광범위한 여론수렴 없이는 어떠한 형태의 전자주민카드 제도도 도입되어서는 안된다.

우리 사회는 아직 첨단과학기술이 내포하는 위험과 사회적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아주 낮은 상태이며, 그 동안 과학기술시스템도 정부와 과학부문의 엘리트 사이의 폐쇄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야기해 왔다. 특별히 우리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안들을 여론수렴 없이 추진하다 낭패를 본 경우들을 근자에도 여러 차례 경험한 바 있다. 쓰레기소각장 정책이나 경부고속철도의 문제가 그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따라서 기술영향평가, 경제적 타당성평가, 사회영향평가 등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실시하여야 하며, 중립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의해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러한 과정을 전혀 무시하고 생략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전자주민카드 제도는 결코 시각을 다투어 한시라도 빨리 시행해야 할 급박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따라서 어떠한 명분이나 이유에도 불구하고 전자주민카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근거법률이 조급하게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루어져서는 안된다. 각 당은 국회 내무위원회에서의 의결을 즉각 번복할 것을 촉구한다.

1997. 11. 14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광주전남지역 공동대책위원회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과학부, 뉴미디어부 기자
발 신 : 공동대책위원회(담당:참여연대 이샛별 간사(723-5300))
제 목 : 통합전자주민카드반대 대책위, 주민등록법개정안 철회에 대한 기자회견, 집회 개최
날 짜 : 1997년 7월 15일 (총 4 쪽)

보 도 자 료

전자주민카드 시행계획을 철회하라

통합전자주민카드 대책위,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운동과 관련한 기자회견, 집회 개최

일시·장소 : ◆ 기자회견 : 97.7.15. 오전 10시 카톨릭회관 3층
◆ 집회 : 97.7.15. 낮 12시 - 2시 국회앞 장기신용은행

1.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공동대표 : 김진균(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지식인연대 대표), 김창국(변호사,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제주지역 대책위와 함께 7월 15일 오전 10시 카톨릭회관 3층에서 그동안 근거법률없이 시행되어온 전자주민카드 시행계획의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 발표와 기자회견을 갖는다.

2. 그동안 대책위가 전자주민카드제도의 시행이 헌법에 위반되며 나아가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에 심각한 위해를 줄 것이므로 시행해서는 아니된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해 왔으나,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위한 제도기반을 착착 마련하여 왔으며 오는 14일 내무부에서 제시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다.

3.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성명서에서 전자주민카드제도는 국민 모두의 개인정보를 한 곳에 모아 전자적으로 관리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제도이며 헌법이 정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권(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또한 대책위는 정부가 그 도입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전문가들의 정밀한 검토와 다양한 토론을 거친 국민의견수렴과정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기부를 중심으로 밀실에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채 이 제도를 추진해온 정부의 오만한 태도를 지적했다.

   대책위는 대통령이 되어 보겠다고 공표한 후보들에게도 전자주민카드 제도 도입에 관한 공식입장을 천명해 줄 것을 감력히 요구하였으며 정부가 전자주민카드 제도 도입을 전제로 하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 **별첨1 : 기자회견, 집회 일정 1부**
- **별첨2 : 대책위 성명서 1부**

● 별첨 1 : 기자회견, 집회일정

**** 전자주민카드 시행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연석기자회견 ****

. 일시 : 1997년 7월 15일 오전 10시
. 장소 : 가톨릭회관 3층 회의실

< 순 서 >

. 사회 : 이대훈 참여연대 사무국장
. 성명서낭독 : 김창국(변호사, 참여연대 공동대표, 대책위 공동대표)
. 제주지역상황설명 : 최병모(변호사, 제주지역공대위 공동대표)
. 참여 대표자들의 자유발언
. 참여예정자 :
김진균 교수(서울대 사회학과, 지식인연대 대표, 대책위 공동대표)
김창국 변호사(참여연대 공동대표, 대책위 공동대표)
천영세(전국연합 공동의장, 민주노총 지도위원),
박형규 목사(KNCC 인권센터), 김승훈 신부(천주교 인권위)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 인기란 민가협 상임의장,
백승헌 민변 사무국장

****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주민등록법개정안저지 결의대회 ****

·일시 : 1997. 7. 15. 낮 12시 ~ 2시
·장소 : 국회 앞 장기신용은행 --> 신한국당사

● 순서 : 사회 - 이대훈(참여연대 사무국장)
- 전자주민카드를 반대하는 이유(대표자 중 한분)
- 정부의 파행추진에 대한 규탄과 지역대책위 상황보고(제주공대위 김상근 목사)
- 시민자유발언
- 전자주민카드에 대한 퍼포먼스
- 성명서 낭독 (김기중 변호사)
- 신한국당사까지 행진

● 별첨 2 : 성명서

정부는 근거법률없이 시행하는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당장 중단하고, 범 국민적 논의를 시작하라.

정부는 지난 1995. 4. 이른바 '전자주민카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하고 이미 전자카드 발급기계도입계약을 체결하는 등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월 14일에는 임시국회 내무위원회에 전자주민카드 제도의 근거법률이 될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상정되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우리는 내년 10월부터 전 국민이 전자주민카드를 소지하게 될 것이고, 제주도 주민의 경우는 내년 4월부터 전자주민카드를 소지하게 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단순히 종이신분증이 전자신분증으로 대체된다거나 주민등록등초본의 발급이 줄어드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 이 제도는 우리들의 생활 방식을 하루 아침에 바꾸어 버릴 수도 있는 큰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도,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은 아주 낮고, 국민들은 제도의 문제점은 고사하고 전자주민카드가 무엇인지 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 공대위는 주민등록법 개정안 상정에 즈음하여 다시 한번 이 제도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먼저, 전자주민카드 제도는 국민 모두의 개인정보를 한 곳에 모아 전자적으로 관리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제도이다. 개인정보가 한 곳으로 집중되면 정보유출의 위험이 증가함은 물론 권력기관에 의한 오용, 남용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이 제도는 헌법이 정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권(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기도 하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3,400만개의 전자주민카드와 연결되는 어마어마한 국가전산망은 행정부의 권한을 거의 무한대로 확장시킬 수 있으므로 궁극적으로는 권력분립의 기초마저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 더구나 전자주민카드 제도의 전제인 주민등록제도 자체에 대하여도 위헌의 의심이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기도 하다. 우리는 전자주민카드 제도가 위와 같은 점에서 위헌의 여지가 많은 제도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독일, 미국, 호주, 헝가리 등 많은 나라에서 법원의 판결이나 시민의 절대적 반대로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려는 정부의 시도가 무산되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제도의 또 하나의 큰 문제점은 제도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정부의 오만한 태도이다. 전자주민카드 제도는 국민들의 일상생활은 물론 사회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한 제도이기에, 그 도입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전문가들의 정밀한 검토와 다양한 토론을 거쳐 국민적인 의견수렴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만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을 수 있는 제도의 문제점이 시정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기는 커녕, 안기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관료들이 밀실에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채 이 제도를 추진하여 왔다. 더구나 근거법률도 제정되기 전에 제도의 기반시설을 구축하며 그 시행을 기정사실로 만들려 하고 있다. 정부는 전자주민카드 제도가 기술적인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미리 법률적 근거를 만들 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의 모든 행위는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원칙은 어떠한 경우

에도 지켜져야 하는 민주국가의 기본원리이다. 제도의 기반시설을 모두 갖추고 그 시행을 기정사실화 한 다음 국회에서는 법률을 '통과'시키는 절차만을 밟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깔보는 의식의 발로에 다름아니다. 정부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예산도 전자주민카드 사업비가 아니라 주민등록증 갱신사업비이다. 이러한 정부의 행위는 예산을 전용하고 있다는 비판외에, 국회를 속이고 예산을 배정받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더우기 지금은 정권교체기로 온 나라가 어수선한 분위기여서 이 문제에 관하여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될 수 없는 시기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자주민카드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 더하여, 이런 어수선한 시기를 택하여, 국민적 공감대형성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서둘러 시행하려는 의도는 무엇인가. 정부가 국민의 눈을 피하려 일부러 이 시기에 도입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면,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엄청난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이 제도의 시행을 미루고, 다음 정부의 결정에 맡기는 것이 옳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전자주민카드 제도의 도입을 전제로 하는 모든 행위를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 또한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정부가 전자주민카드의 시행을 전제로 하는 모든 행위를 당장 중지하지 않는다면,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게 되며, 나아가 관련 산업체에서는 전자주민카드의 시행을 전제로 하여 많은 시설투자를 하게 된다. 만약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하거나 전자주민카드 발급거부라는 국민적 저항을 받아 제도 자체를 시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될 경우 국가는 물론이고 이 사업을 전제로 투자를 하였던 많은 기업들이 입을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정부는, 전자주민카드 제도의 도입을 전제로 하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열린 마음으로 제도의 도입여부 문제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는 국민적 논의의 장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어 보겠다고 공표한 모든 후보들도, 전자주민카드제도 도입에 관한 공식입장을 천명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보호를 위한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

민주화실천교수협의회(대표 유초하교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표 최영도회장),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대표 이창복의장),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대표 임기란 상임의장),
법률소비자연맹(대표 김대인홍재),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김창국), 천주교 인권위원회(대표 김형태변호사),
한국교회협의회 인권센터(대표 박형규목사) < 이상 가나다순 >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를 위한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최병모,고충석, 김상근)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1997. 10. 7.

수 신 각 참여단체 담당자

발 신 김기중(전화 : 567-2316, 팩스 : 568-3439)

제 목 긴급회의 결과

■ 회의일시와 장소 : 1997. 10. 1. 16:00 법률소비자연맹

■ 참석자 : 참여연대 이대훈국장, 법률소비자연맹 홍금예실장, 이혜영, 지식인연대 이종회사무처장, 정보연대 오병일, 고영경

■ 회의안건 : 내무부의 변경된 계획안에 대한 대응방안

■ 경과

0. 9월 25일경 내무부차관이 국민회의의 추미애의원을 만나 수정안을 제시하며 협조를 부탁하였음이 추미애의원실의 비서관을 통하여 확인되었음. 추의원실의 비서관은 내무부의 수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구하였음.

0. 추의원실 비서관의 전언에 의하면 내무부차관이 제시한 수정안은 다음과 같음. 첫째, 전자주민카드에 수록할 내용을 현행 주민등록중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과 주민등록등초본 사항으로 대폭 축소함, 둘째, 전산망은 현재의 주민망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자주민카드용 전용망을 별도로 구축함, 셋째, 다만 전자카드의 하드웨어 사양은 현재 계획된 방식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임. 전자카드의 하드웨어 사양중 핵심은 컴퓨터 칩(IC칩)인데, 컴퓨터 칩의 용량은 그대로 8Kbyte급으로 한다는 것임.

0. 그 이전에 국회 결산을 하는 자리에서, 여당의원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의원들이 전자주민카드 사업이 법률적 근거없이 예산을 사용하였으며, 앞으로 사용될 예산도 낭비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하였음.

0. 법률소비자연맹은 대선후보들과 모든 국회의원, 각 정당에 전자주민카드에 관한 정책질의를 하였음. 국민회의는 명시적인 반대의견을 표명한 답변서를 보내왔음. 다른 답변서가 모두 도착하는대로 결과를 보고할 예정임.

■ 내무부의 수정안에 대한 참석자들의 의견

0. 우선 내무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0. 내무부의 수정안은 전자주민카드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만큼 기존의 전자주민카드 계획과 사실상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 함.

0. 하지만 내무부의 수정안은 형식적으로 볼 때 기존의 계획을 대폭 양보한 모습을 띠고 있으므로, 일반 국민들에게는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음. 따라서 반대운동은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였음.

0. 내무부의 수정안에 대한 공대위의 공식입장을 미리 정리할 필요가 있음.

0. 내무부가 수정안을 바탕으로 국회 내무위원들을 개별적으로 설득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함.

0. 당장 할 수 있는 대비책은 마땅하지 않으므로, 각 소속단체는 내무부가 수정안을 공식화하고 국회에 상정할 때를 대비하여 항상 긴장하고 대기하고 있어야 함. 필요한 행동(예를 들면 국회방문 등)이 제시되었을 때 즉시 행동에 나설 수 있어야 함. 소속단체에서 내무위원들을 개별적으로 진담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음.

0. 여론수렴과 프라이버시보호법을 제정하라는 주장을 좀 더 강하게 하고, 기술영향평가를 제안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있었음.

■ 이후의 활동방안

0.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삭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0. 내무부 수정안이 10월 16일에 있을 내무부 국정감사에서 공식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시하고 있어야 함.

■ 회의의 결과를 토대로 내무부의 수정안에 대한 「공대위의 공식의견(초안)」을 첨부함. 공식의견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기 바람.

F:\JD\EID\CARD55.HWP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내무부의 수정안에 대한 의견

1. 알려진 바에 의하면 내무부는 전자주민카드의 수록내용을 대폭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전자주민카드 계획을 수정제안하였다고 함. 알려진 수정안의 내용은 첫째, 전자주민카드에 수록할 내용을 현행 주민등록증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과 주민등록등초본 사항으로 대폭 축소함, 둘째, 전산망은 현재의 주민망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자주민카드용 전용망을 별도로 구축함, 셋째, 다만 전자카드의 하드웨어 사양은 현재 계획된 방식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임. 전자카드의 하드웨어 사양중 핵심은 컴퓨터 칩(IC칩)인데, 컴퓨터 칩의 용량은 그대로 8Kbyte급으로 한다는 것임.

2. 광범위한 여론수렴없이는 어떠한 형태의 전자주민카드 제도도 도입될 수 없음.

0. 우선 어떠한 수정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어서는 아니됨. 우리 사회는 아직 첨단 과학기술이 내포하는 위험과 사회적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아주 낮은 상태임. 그동안 과학기술시스템은 정부와 과학부문의 엘리트 사이의 폐쇄적인 의사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야기해 왔음. 여론수렴없이 추진한 쓰레기소각장 정책에 의하여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경제성이 없고, 다이옥신이라는 환경침해요소 내포), 경부고속철도의 문제가 대표적임.

0. 따라서 기술영향평가, 경제적 타당성 평가, 사회영향평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중립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의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3. 전자주민카드가 위험한 이유중의 핵심은 컴퓨터 칩에 있는 것임.

0. 전자주민카드가 유용하다는 핵심, 반면에 위험하다는 핵심도 컴퓨터 칩(IC칩)에 있는 것임. 총체적 국가관리사회는 전 국민에게 소규모 컴퓨터 역할을 하는 전자카드를 지급함으로써 도래할 수 있는 것이지, 전자카드의 수록내용이 많기 때문이 아님.

0. 기존의 전자주민카드 계획의 핵심적인 용도는 전자적인 방식의 신분확인에 있었고, 운전면허증과 의료보험증의 기능은 사실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였음. 부수적인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전자주민카드의 위험성이 증폭된다는 비판이었던 것임. 그런데 수정된 전자주민카드 계획에 의하여도 전자적 방식으로 신분확인을 하는 핵심적 기능은 전혀 전혀 변하지 않은 것임.

0. 그동안 공청회에서 전자주민카드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던 학자들의 의견은 모두 신분확인의 전자화에 대한 문제제기였지, 전자주민카드에 의료보험증, 운전면허증을 통합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었음이 분명히 지적되어야 함.

0. 한편, 수록내용이 축소되었다고 하여 큰 의미를 가질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전자주민카드 제도가 시행되면 그 수록내용은 언제든지 추가할 수 있기 때문임. 이는 컴퓨터 칩의 용량을 줄이더라도 마찬가지임. 컴퓨터 칩의 용량은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임.

0. 따라서 컴퓨터 칩을 제거하지 않는 한 내무부의 어떠한 수정 계획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

4. 내무부의 수정안대로라면, 전자주민카드 편요성은 대부분 상실되었음

0.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초본만을 전자카드에 수록한다면, 왜 '전자적 방식'으로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야 하는지 알 수 없음.

0. 주민등록등초본을 요구하는 기관에 대하여, 그 현장에서 전자주민카드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라는 취지인 듯함. 하지만 이미 공대위에서 누차 주장하였듯이 현재와 같이 무분별하게 주민등록등초본을 요구하는 관행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관건임.

0. 또한 보험회사, 은행 등의 민간기업이 신용카드 판독기보다 5배이상이 비싼 전자주민카드 판독기와 출력기를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할 가능성이 아주 작기 때문에, 주민등록등초본을 동사무소에 직접 가서 발급받아야 하는 일은 거의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국회 공청회 자리에서 확인되었음. 따라서 주민등록등초본만을 수록하는 전자주민카드 계획의 유용성은 전혀 없을 것으로 보임.

0. 한편, 주민등록증의 위변조를 방지한다는 명분도 설득력이 없음. 현재의 주민등록증은 그 제작방법과 재질이 위조하기 쉬운 것이어서 위변조가 많이 발생하는 것임. 따라서 현재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카드의 모양, 즉 비표를 삽입하고 압착방식의 플라스틱 카드(컴퓨터 칩을 뺀 것)를 사용한다면 위변조의 사례는 대폭 줄어들 수 있을 것임.

0. 더구나 위헌이라는 지적이 있는 현재의 주민등록 제제를 그대로 두고 이를 전자카드로 만드는 것은 허용할 수 없음. 먼저 주민등록증에는 신분확인의 기본 4정보인 이름, 주소, 사진, 성별만을 수록하여야 하고, 현재의 주민등록증에 수록되어 있는 나머지 사항인 지문, 호주, 본적, 병역사항 등은 모두 삭제해야 할 것임.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오랫동안 신분확인의 키워드로 사용되어 왔다는 점에서 수록할 수 있겠으나, 개인정보를 담지 않은 무의미한 일련번호로 변경되어야 할 것임.

5. 경제적 타당성이 없음

0. 전자주민카드 계획은 정부계산만 2,700여억원이 필요하며, 부대시설비용, 관련자 교육비용, 이용자

교육비용, 사회적응비용 등까지 감안하며 훨씬 많은 비용이 필요한 사업임. 그런데 주민등록등초본만을 수록하겠다는 수정된 내무부의 계획으로는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고 보아야 함. 이미 많이 지적되었듯이 호주나 영국에서도 한때 시행하려던 전자신분증 발급계획의 초기비용을 이후에 2배이상으로 조정한 사례가 있었음.

0. 전자주민카드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행정능률의 개선효과는 별로 없다는 것이 그 타당성을 분석한 한국전산원의 결론임(한국전산원, "전자주민카드의 사회 및 산업영향 분석", 148쪽). 즉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인감, 병적과 관련된 각종 증명서 발급업무는 전체 업무량의 20%에 불과하며, 이 업무중에서도 실제적으로 증명발급과 관련되는 사무의 비중의 약30%에 불과하다고 함. 따라서 전자주민카드 도입에 따른 순수한 인력절감효과는 직접적인 관련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30%에 불과하며, 관련 공무원중 30%의 인력감축효과는 1개 동사무소에 2명의 담당자가 있을 때 1명을 감축할 수는 없는 일이기에 현실에서는 거의 그 효과가 없다고 봄.

0. 더구나 전자주민카드의 기술영향평가, 사회영향평가 등이 엄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이 제도를 성불리 추진하게 되면 경부고속철도 처럼 그 비용이 어느 정도로 확장될 지 알 수 없을 것임. 끝.

F:\ID\HD\CARD54.HWP

국민적 합의없이 추진되는

전자주민카드 시행을 반대한다!

우리는 우리 사회 안에서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성이 어떠한 이유에서건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 신앙의 진리와 신앙인의 양심에 근거하여 꾸준히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명하여 왔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보살피라는 하느님의 요청에 대한 응답이며, 하느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우리 신앙인의 의무이자 권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우리는 현재 정부가 추진중에 있는 전자주민카드 제도가 하느님이 부여한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전자주민카드의 시행을 강력히 반대하는 바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전자주민카드의 근거법률이 될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상정, 통과될 예정에 있다는 사실을 접하며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현행 주민등록증 자체만으로도 개인의 정보는 과도하게 유출되어 인권침해의 소지가 높다. 그런데도 한술 더 떠 주민등록, 운전면허, 의료보험 등 무려 서른 다섯 가지 개인 정보를 전자주민카드 한 장에 모아 통합관리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행정의 효율과 국민편익을 위해서라는 눈에 보이는 변명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주의요 개인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볼 수 없다. 특히 전자주민카드의 구상이 지난 1989년 안기부와 경찰청의 요청에 의해 비롯되었다는 것을 정부관계자들조차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이 제도의 순수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안기부의 개입 자체를 순수하게 받아들일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전자주민카드의 시행이 가져올 위험성을 경고하기에 앞서 이 사업의 추진 과정상의 절차를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 전자주민카드의 시행은 전국민의 사회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따라서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자주민카드 시행의 근거법률이 될 주민등록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는 현재에도 이 사업의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국민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일 뿐 아니라 근거법도 확정되기 전에 카드제조장비와 발급장비의 도입계약을 마쳐 제도 시행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다.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대형 국책사업이 이처럼 소리소문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역시 전자주

민카드 시행의 순수성을 의심하게 하는 중요한 지적 가운데 하나다.

또한 우리는 개인정보가 통합되고, 통합된 정보를 국가가 관리하게 될 이 사업이 시행될 때 나타날 위험성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를 한 데 모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정보 악용의 위험성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를 국가기관이 통합관리하는 경우 어떤 기관이 언제, 어떻게, 어디에 활용하게 될지 알 수 없으며, 따라서 정보 유출과 오·남용의 위험성은 늘 상존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 국민 개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자료를 권력기관이 독점하였을 때 그 위력은 가히 상상하기 어렵다. 정보의 독점이 곧 국민감시와 통제의 강화로 이어질 것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 수준으로 볼 때 필연적인 수순이다.

우리는 이러한 위험성을 내포한 전자주민카드를 국민적 합의없이 성급히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순수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 사업이 정부의 주장대로 행정의 효율과 국민의 편익을 위한 사업이라면 그 추진과정을 국민에게 낱낱이 공개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올바른 일임을 다시한번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이러한 절차 없이 정부가 전자주민카드 제도를 강행한다면 우리는 신앙인의 양심을 걸고 지속적으로 카드발급거부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선언한다.

1997. 7. 11

전주고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062-

문의 ; 정의평화위원회 (232-6008)

보 도 자 료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KNCC인권위원회 YMCA 과천시민의모임 노동정보화사업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와진보를위한 지식인연대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법률소비자연맹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보연대SING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정보문화센타 통일시대민주주의국민회의 한국과학기술청년회(이상 가나다순)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과학부 담당기자 · 사회단체

발 신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담당 : 변호사 김기중(전화 : 567-2316, 팩스 : 568-3439)

제 목 전자주민카드 법안, 임시국회 처리 않기로

날 짜 1997. 7. 22. (총1쪽)

전자주민카드 법안, 임시국회 처리 않기로

1. 국회 내무위원회는 오늘(7. 22.) 오전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자주민카드 관련법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전자주민카드 관련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내무위원회가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8개의 법안중 전자주민카드 관련법안인 주민등록법과 인감증명법 개정안을 제외한 나머지 6개 법안만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오늘 오후에 속개될 내무위원회 안건처리회의에서도 전자주민카드 관련법안은 다루어지지 않게 된 것이다.

2. 국회의 결정은 전자주민카드 관련법안을 폐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를 갖고 있지만, 국회가 전자주민카드 제도의 문제점을 일부라도 인식하고 제도의 도입여부에 관하여 전문가들의 정밀한 검토와 다양한 토론을 거쳐 국민적인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야 함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3. 정부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전자주민카드 제도를 기정사실로 만들려는 모든 행위를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 정부의 어떠한 변명에도 불구하고 전자주민카드 제도를 도입할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정부의 모든 행위는 불법적인 것이다.

4. 따라서 정부는 지난 1월에 독일 및 미국 기업과 체결한 전자주민카드 제조장비(독일 멜처사)와 발급장비(미국 데이타카드사) 도입계약은 물론이고, 지난 해 말에 체결한 전자주민카드 전산망 전담사업자계약(주식회사 데이콤), 주민카드처리시스템공급계약(삼전산업주식회사) 등을 모두 취소하고, 제도의 도입여부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여야 한다. 나아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예산을 전용하고 법률도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적인 사업을 진행한 관계자들을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끝.

제목:[속보]주민등록법 개정안 심의보류
올린이:kijoongv(김기중) 97.07.22 12:18:04 조회: 7

오늘(7. 22) 10시 국회 내무위원회는 그동안 참석하지 않았던
신한국당 의원들과 함께 상임위를 개최하여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할 법률안을 결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자주민카드의 근거법률이 될 예정이었던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아직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되지 않으면, 상임위의 의안으로도 상정되지
않게 되므로,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일단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처리되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동안 임시국회 주민등록법 개정안 통과저지를 위하여 노력하신
여러분들의 의지가 결국 개정안의 통과를 막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 자축합시다.

김기중

보도자료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청회

담당 : 문민사(정의평화정보센터/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를 위한 전북지역 공대위 준비모임)

전자주민카드, 민주주의 기본 원칙 흔든다.

전자주민카드 반대 공청회 처음 열려, 공동대책위 결성 다짐-

전자주민카드에 대한 공청회가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열렸다.

6월 4일 저녁7시에 원불교 전주교구청에서 70여명의 사회단체회원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린 이 공청회는 정의평화정보센터 INP(정보민주주의를 위한 네트워크 사업단: 단상임청현)가 주관하고,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등 14개 단체(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북연합,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새시대 노동자회, 전북 샛길청년회, 전북 청년노동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전주지회, 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 정의평화 정보센터, 천주교 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 전주시민회, 전북 인권선교협의회, 전북 시민운동연합, 전북대학교 정보통신단)가 공동 주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지방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전자주민카드 반대 공청회였다.

인사말을 통해 문규현 신부(정의평화정보센터 대표)는 기본적 인권이 유린되고 대광의 양심수가 양산되어 온 근래의 교훈은 국민이 감시하지 않으면 어떤 정부든 독재로 회귀하고 만다는 점이라고 말하고, 철딘기술을 통한 전자독재사회를 꿈꾸는 정부에 맞서 모든 사람이 연대해 싸우자며 동참을 호소했다.

주발제를 맡은 김기중 변호사(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는 전자주민카드 시스템은 나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 시스템으로 통합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전자주민카드 시스템에 의한 행정부의 통제시스템 강화는 힘의 균형을 파괴하여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권력의 분립을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변호사에 의하면, 효율성을 이유로 국가신분증제도와 전산화된 개인정보를 결합하는 것은 국가의 수중에 전대권력을 부여하여 전자감시사회를 앞당기는 셈이 된다. 그리고 만약 전자주민카드가 도입되면,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실시되는 것이듯, 우리나라는 사람의 몸

속에 컴퓨터칩을 담아 가지고 다니는 세계 최초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어서 김승환 교수(전북대학교 법과대학 헌법학)는 전자주민카드는 우리 헌법 제 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즉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이고, 제 10조의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의 불가침성을 확인하고 보호할 (국가의) 의무"에 대한 방기이다. 또, 헌법 제37조 2항이 규정하는 "기본권 제한의 과잉 금지"의 원칙을 침해한다. 이는 결국 헌법 제1조가 규정하는 국민주권의 형해화(形骸化)된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또한 토론자로 참가한 조문익 교육선전국장(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은 전자주민카드를 정점으로 하는 '정보화'는 재생산의 위기에 처한 현대자본주의의 신보수주의/신자유주의 전략의 필요조건이라고 분석했다. 또 국가보안법, 주민등록증, 사규, 블랙리스트, 정보통신법 등으로 이어지는 노동통제장치의 변화과정에 놓이는 전자주민카드는 좀더 교묘해지고 더욱 강화된 노동통제방식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전주지회의 김완자 회장은 인간의 기본권리를 무시하는 어떠한 제도도 시행되어서는 안되며 모두가 나서서 전자주민카드 발급거부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정의평화정보센터 INP의 임창현 단장은 전자주민카드가 감시와 통제 그리고 도용 등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범죄를 유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 참석자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현재의 준비모임을 발전시켜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를 위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전북도의회에서도 전자주민카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여 시행반대결의할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인터넷 Homepage 홍보.
전주 공동캠페인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를 위한 광주전남지역 준비모임
광주시 동구 금남로 3가 3-5 가톨릭센타 608호 전화 227-6008 전송 225-1306

보도자료

수신 : 각 방송사 신문사 보도국 편집국 귀중
제목 :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를 위한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를 위한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 일시 : 1997년 7월 15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가톨릭센타 7층 703호

◎ 참여단체 : 총 21개 단체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광주YMCA, 광주YWCA, 민주노총광주전남지역본부, 민주주의민족통일광주전남연합, 전교조광주지부, 전교조전남지부, 천주교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인권지기, 시민연대모임, 빛고을정보공동체, 21세기청년광장, 전국농민회전남도연맹, 용봉동우회, 통일과참여로가는노동자회, 광주민주청년회, 가톨릭노동상담소, 21세기녹색복지회, 우리농촌살리기운동천주교광주대교구본부, 광주전남양심수후원회

◎ 문의 : 대책위 임시사무국(천주교 정평 227-6008)

'전자주민카드 시행'에 반대하는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우리는 최근 국회에 제출된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내무위의 심의·의결이 임박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본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내무위 심의와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될 경우 물고 올 파장에 대해 우려를 금치 못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국민적 합의 없는 전자주민카드 시행을 반대한다.

정부의 일정에 따르면, 전자주민카드는 98년 4월 제주도지역 우선 실시를 시작으로 오는 98년 10월부터 카드발급을 시작해 오는 99년 10월이면 전국의 17세 이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국민 개개인의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중대성에 걸맞는 국민적 합의 과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가 지난해 가입한 바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통제권을 강조하는 '사생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보수집은 정보주체가 동의해야 함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35개 항목에 이르는 개인의 거의 모든 신상자료를 수록하게 될 전자주민카드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단 몇 차례의 공청회로 국민적 여론수렴을 다한 후 추진한다는 내무부의 주장에 과연 어떤 국민이 동의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국민적 동의 없이 내무부의 일방통행으로 진행중에 있는 전자주민카드 시행을 결사 반대한다.

인권과 프라이버시 침해의 소지가 다분한 전자주민카드 시행을 반대한다.

전자주민카드의 시행은 현재의 주민등록증 자체만으로도 개인의 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되어 인권침해의 소지가 높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개인의 인권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중대한 침해의 위협을 안고 있다. 전자주민카드에 수록될 35개 항목의 개인신상에 대한 자료 내용이 활용의도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을 생각할 때, 이 제도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는 헌법정신에도 위배될 수 있음을 우리는 주목한다. 특히, 이 제도의 계획·추진단계에 안기부가 개입되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의심의 눈길을 거둘 수 없다.

보안대책없는 전자주민카드 시행을 반대한다.

우리는 현재 한달에 수십 건에서 수백 건의 고장을 일으키고 있는 국내 행정전산망의 수준과 국내의 네트워크에 대한 감시·통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철저한 보안대책 없이 전자주민카드 제도가 시행될 경우 발생할 혼란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철저한 보안체계를 통해 정보의 유출을 막겠다는 내무부의 주장을 우리는 결코 신뢰할 수 없

JUL 15 '97 10:34

으며, 작년 이한영씨 사건 등에서 확인하듯이 여러 정보유출사건 중 많은 경우가 내부소행자의 위법행위였다는 것을 상기한다면 우리의 우려가 단순한 기우에 그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하다.

'백프로 완벽한 전산망과 암호체계는 없다'는 컴퓨터 전문가의 충고와 보안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불감증을 고려할 때, 개인의 신상자료를 한 장의 카드에 모으는 이 제도가 시행되었을 경우 어떤 사태가 빚어질 것인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국민적 합의와 주민등록법 개정안의 국회의결 등 사업의 기본전제도 확보하지 않은 채 외국에서 카드제조장비를 들여오고 일선 행정기관의 실무교육까지 마쳤다는 보도내용을 접하면서 우리는 놀라움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위에 열거한 문제점에 대한 진지한 검토 없이 전자주민카드 제도가 시행된다면, 올해초의 노동법 개정 파문과 같은 전국민적 저항과 국론분열을 또다시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미 서울과 제주를 비롯한 전국의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이 제도의 시행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임시국회에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졸속 처리되어 통과된다면 이는 불행한 역사를 또다시 반복하는 것임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대한 보다 엄밀한 진단에 근거하여 국민들의 합의가 전제될 수 있도록 이번 국회에서의 의결은 미루어져야 함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만약 이 법안이 국민적 합의 없이 졸속 통과될 경우 지역의 모든 시민사회단체들과 합심하여 '전자주민카드 발급거부운동'을 펼쳐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1997. 7. 15

전자주민카드 시행에 반대하는 광주지역 시민 · 사회단체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광주YMCA, 광주YWCA, 민주노총광주전남지역본부, 민주주의민족통일광주전남연합, 전교조광주지부, 전교조전남지부, 전주고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인권지기, 시민연대모임, 빛고을정보공동체, 21세기청년광장, 전국농민회전남도연맹, 용봉똥우회, 통일과참여로가는노동자회, 광주민주청년회, 가톨릭노동상담소, 21세기녹색복지회, 우리농촌살리기운동전주교광주대교구본부, 광주전남양심수후원회)

통일시대 민주주의 국민회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128-10 서울빌딩2층
전화 : 362-6086/8 팩스 : 362-6089

1997. 7. 15.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발 신 : 통일시대민주주의국민회의 사무총장 李文鎭(이문령)
제 목 : 전자주민카드 도입계획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논평

전자주민카드 도입계획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

1. 정부는 지난 1995년 4월 전자주민카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하고 지난 7월 14일 제184회 임시국회 내무위원회에 전자주민카드 제도의 근거법률이 될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2. 우리는 전자주민카드제도는 국민 모두의 개인정보를 한 곳에 모아 전자적으로 관리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제도이며 헌법이 정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3. 또한 정부가 전자주민카드의 도입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전문가들의 정밀한 검토와 다양한 토론을 거친 국민의견수렴과정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기부를 중심으로 밀실에서 이 제도를 추진해온 정부의 오만한 태도에 거듭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4. 우리는 정부가 전자주민카드 제도의 도입을 전제로 하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제도의 도입여부 문제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는 국민적 논의의 장에 나서야 함을 밝히며 아울러 현재 추진중인 주민등록법 개정과 전자주민카드 도입계획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바이다.

정부는 근거법률없이 시행하는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당장 중단하고, 범 국민적 논의를 시작하라.

정부는 지난 1995. 4. 이른바 '전자주민카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하고 이미 전자카드 발급기계도입계약을 체결하는 등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월 14일에는 임시국회 내무위원회에 전자주민카드 제도의 근거법률이 될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상정되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우리는 내년 10월부터 전 국민이 전자주민카드를 소지하게 될 것이고, 제주도 주민의 경우는 내년 4월부터 전자주민카드를 소지하게 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단순히 종이신분증이 전자신분증으로 대체된다거나 주민등록등초본의 발급이 줄어드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 이 제도는 우리들의 생활 방식을 하루 아침에 바꾸어 버릴 수도 있는 큰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도,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은 아주 낮고, 국민들은 제도의 문제점은 고사하고 전자주민카드가 무엇인지 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 공대위는 주민등록법 개정안 상정에 즈음하여 다시 한번 이 제도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먼저, 전자주민카드 제도는 국민 모두의 개인정보를 한 곳에 모아 전자적으로 관리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제도이다. 개인정보가 한 곳으로 집중되면 정보유출의 위험이 증가함은 물론 권력기관에 의한 오용, 남용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이 제도는 헌법이 정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권(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기도 하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3,400만개의 전자주민카드와 연결되는 어마어마한 국가전산망은 행정부의 권한을 거의 무한대로 확장시킬 수 있으므로 궁극적으로는 권력분립의 기초마저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 더구나 전자주민카드 제도의 전제인 주민등록제도 자체에 대하여도 위헌의 의심이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기도 하다. 우리는 전자주민카드 제도가 위와 같은 점에서 위헌의 여지가 많은 제도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독일, 미국, 호주, 헝가리 등 많은 나라에서 법원의 판결이나 시민의 절대적 반대로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려는 정부의 시도가 무산되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제도의 또 하나의 큰 문제점은 제도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정부의 오만한 태도이다. 전자주민카드 제도는 국민들의 일상생활은 물론 사회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한 제도이기에, 그 도입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전문가들의 정밀한 검토와 다양한 토론을 거쳐 국민적인 의견수렴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만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을 수 있는 제도의 문제점이 시정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기는 커녕, 안기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관료들이 밀실에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채 이 제도를 추진하여 왔다. 더구나 근거법률도 제정되기 전에 제도의 기반시설을 구축하며 그 시행을 기정사실로 만들려 하고 있다. 정부는 전자주민카드 제도가 기술적인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미리 법률적 근거를 만들 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의 모든 행위는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원칙은 어떠한 경우

에도 지켜져야 하는 민주국가의 기본원리이다. 제도의 기반시설을 모두 갖추고 그 시행을 기정사실화 한 다음 국회에서는 법률을 '통과'시키는 절차만을 밟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깔보는 의식의 발로에 다름아니다. 정부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예산도 전자주민카드 사업비가 아니라 주민등록증 갱신사업비이다. 이러한 정부의 행위는 예산을 전용하고 있다는 비판외에, 국회를 속이고 예산을 배정받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더우기 지금은 정권교체기로 온 나라가 어수선한 분위기여서 이 문제에 관하여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될 수 없는 시기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자주민카드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 더하여, 이런 어수선한 시기를 택하여, 국민적 공감대형성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서둘러 시행하려는 의도는 무엇인가. 정부가 국민의 눈을 피하려 일부러 이 시기에 도입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면,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엄청난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이 제도의 시행을 미루고, 다음 정부의 결정에 맡기는 것이 옳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전자주민카드 제도의 도입을 전제로 하는 모든 행위를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 또한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정부가 전자주민카드의 시행을 전제로 하는 모든 행위를 당장 중지하지 않는다면,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게 되며, 나아가 관련 산업체에서는 전자주민카드의 시행을 전제로 하여 많은 시설투자를 하게 된다. 만약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하거나 전자주민카드 발급거부라는 국민적 저항을 받아 제도 자체를 시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될 경우 국가는 물론이고 이 사업을 전제로 투자를 하였던 많은 기업들이 입을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정부는, 전자주민카드 제도의 도입을 전제로 하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열린 마음으로 제도의 도입여부 문제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는 국민적 논의의 장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어 보겠다고 공표한 모든 후보들도, 전자주민카드제도 도입에 관한 공식입장을 천명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보호를 위한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대표 유초하교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표 최영도회장),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대표 이창복의장),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대표 임기란 상임의장),
법률소비자연맹(대표 김대인총재),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김창국), 천주교 인권위원회(대표 김형태변호사),
한국교회협의회 인권센터(대표 박형규목사) < 이상 가나다순 >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를 위한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최병모,고충석, 김상근)

민주주의 민족통일전국연합
National Alliance for Democracy & Unification of Korea
●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1가 44번지 삼우빌딩 301호
☎ 747-4364~5 · FAX 747-4363 · 천리안 ID : NADUK · 하이텔 ID : naduk

지정수신인 : 인권운동사랑방

수 신 : FAX/8227415364(인권운동사랑방)
발 신 : NADUK
송신 시각 : 97/07/14 11:46
수신 시각 : 97/07/14 13:10
메시지 ID : M9707001ONADUK
제 목 : 전자주민카드도입 추진 중단촉구

<전자주민카드도입 추진 중단 촉구성명>

전국민을 감시하는 전자주민카드도입을 즉각 중단하라!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중인 '주민등록법','인감증명법'개정안에 대해 우리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은 심히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골자가 전자주민카드의 도입에 있다. 전자주민카드는 일종의 IC카드로 이 카드안에 국민생활과 밀접한 7개 증명을 통합운영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며 행정의 효율화와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내무부측의 주장이다.

전자주민카드가 도입되면 국가와 사회의 활동에 미칠 영향은 예상을 훨씬 초과할 수 밖에 없다. 국민들의 생활은 엄청난 변화를 초래할 것이 뻔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전문적인 토론을 거쳐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았으며 도입이후의 예상되는 각종 사안을 검토하지 않은 듯하다. 오히려 이를 은폐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예산면에서도 정부의 주장대로라고해도 총 2,735억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부수적인 면면을 살펴보면 최소한 7,000억원대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모 일간지가 분석한 바도 있다.
이는 전자주민카드의 도입을 강행하려는 이유가 기업체의 로비에 의한 것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 하겠다. 결국 이러한 부담은 국민들의 주머니속에서 나오는 길밖에 없다.

또한 전국연합등 전자주민카드 도입을 반대하는 모든 단체들은 전자주민카드가 사생활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우려속에 충분한 안전장치를 갖지 않고 있는 현재의 도입계획을 전면 반대한다.
이미 정보화사회로 진입한 우리사회에서는 갖가지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기업체의 홍보물이 배달되는 것은 이제는 너무나도 흔한 개인정보유출사례이다.
특히 국민들을 강제적으로 등록시켜 관리하는 것은 소위 후진국들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국민통제장치]이다. 더구나 전자주민카드도입에 국가안전기획부 대공담당자가 참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 도입 저의가 무엇인지 뻔한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취지에서 우리 전국연합은 임시국회에서 전자주민카드가 도입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만일 정부와 여당이 다수 국민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이를 강제로 통과시킨다면 전국연합은 온국민과 함께 발급거부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1997년 7월 14일

발신일시 : 98/01/06 03:52
발 신 인 : 인터넷 (jinbo-..)
수신/참조: 수신

제 목 : ■ 전자주민카드 반대한다는

From:jinbo-owner@ns.sing-kr.org
Date: Tue, 6 Jan 1998 00:35:03 +0900

Subject: ■ 전자주민카드 반대한다는 당선자 약속

■ 이 네모난 말머리는 '전자주민카드 반대'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암흑의 카드란 뜻이죠. 그림문자를 쓰기 힘드신 분들은 창살무늬(|||)
를 쓰세요! 우리의 뜻을 시각적으로 알려 냅시다.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1997. 12. 30.

■ 전자주민카드를 반대한다는 당선자의 약속은
■ 즉시 이행되어야 한다.
■ - 전자주민카드 시행을 반대하는 각계 인사 688인 선언 -

새정치국민회의는 1997. 9. 중순경 법률소비자연맹의 정책질의에 대하여 전자주민카드를 반대하는 것이 국민회의의 입장이며 나아가 현재의 주민등록증제도 자체도 장기적으로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회신하였다. 한편 김대중당선자도 다수 언론의 인터뷰와 1997. 12. 14.에 실시된 제3차 TV합동토론회 등에서 전자주민카드 제도에 반대한다는 뜻을 거듭 천명한 바 있다. 따라서 모든 국민들은 앞으로 전자주민카드에 관련된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가시적인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전자주민카드를 담당하는 행정관료들이 아직까지도 이 제도의 강행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는 점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또한 전자주민카드 제도는 발급센터를 구축해야 하고 일시에 3,400만장의 카드를 발급하기 위하여 사전에 카드를 만들어 두어야 하기 때문에, 제도의 추진주체들은 우선 제도의 기반시설을 만들어 둠으로써 그 시행을 기정사실화 할 가능성도 있다. 관련된 많은 사업자들도 전자주민카드에 필요한 장비제조시설에 사전투자를 하였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런데 경부고속철도의 경우를 보듯이 이렇게 사업의 기반시설을 미리 구축하게 되면 그 시행을 백지화시키기는 참으로 어렵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김대중당선자와 정권인수위원회는 이 제도의 시행에 관한 '굳히기'를 시도하려는 행정관료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반대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더구나 전자주민카드 제도는 지금까지 지적된 문제 외에도 국가부도사태까지 염려해야 하는 새로운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더욱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첫째, IMF의 요구에 따라 대규모 긴축재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당장 급박한 국책사업이 아닌 것들은 이를 포기하거나 축소할 수밖에 없는데, 전자주민카드 사업은 포기해야 하는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사업이다. 왜냐하면 전자주민카드 사업으로 당장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위하여 배정된 1998년도 예산은 그리 많지 않으나, 발급을 시작하는 1998년 12월부터는 몇천억원대의 대규모 예산이 사용될 예정이므로 미리 사업포기의사를 분명히 해야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전자주민카드제도를 시행하는 데는 다양한 첨단기술과 장비가 사용되는데 그 기술과 장비의 대부분은 국내생산품이 아니라는 점이다. 내무부는 이미 독일 멜처사, 미국 데이타카드사와 각각 주민카드 제조장비와 발급장비도입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설사 카드와 관련장비의 국내생산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관련 기술의 특허는 모두 외국의 것이므로 대규모의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점은 피할 수 없다. 금액을 충전하고 지워가는 단순한 기능의 버스카드 조차 그 전량을 프랑스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우리 현실을 감안한다면, 전자주민카드제도는 걸음마도 배우기 전에 뛰기부터 하려는 성급한 정책결정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전자주민카드제도는 지방자치제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제도이다. 주민관리업무는 주민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주민복지업무에 활용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이다. 그런데 이번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전자주민카드의 도입을 매개로 하여 주민관리업무를 전적으로 내무부에 위임하도록 하고 있다. 설사 이러한 위임이 없다 하더라도 전자주민카드제도는 내무부와 중앙경찰청의 권한을 강화시키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이러한 점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내무부가 지방자치제도로 인하여 권한이 축소되자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자주민카드제도를 도입하려 한다고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전자주민카드의 폐지뿐만 아니라 새 정부가 보다 인간지향적인 제도개선을 이루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당선자는 전자주민카드시행계획을 철회한다는 명시적인 선언을 해야 한다.

둘째, 1962년에 극단적인 남북대치상황에서 간첩을 색출한다는 명목하에 도입된 주민등록제도를 인권을 보호하는 형태로, 그리고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형태로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민간, 정부합동으로 가칭 [주민등록제도개선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한다.

셋째 정부와 기업, 심지어 개인에 의하여 쉽게 침해되고 있는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적부분과 사적부분을 포괄하는 가칭 [프라이버시보호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

공동대표 김진균, 김창국

선언자 명단 별첨

■ 선언자 명단

종교계

가톨릭(신부)

강승한(서울교구), 강종훈(광주가톨릭대학교), 고봉호(전주교구 둔율동성당), 곽동철(청주교구 사직1동성당), 권병식(광주교구 흑산도성당), 권완성(전주교구 주현동성당), 권이복(전주교구 순창성당), 권혁동(서울교구 천호동성당), 김계홍(광주교구 주월동성당), 김교동(전주교구 도룡동성당), 김권일(청주교구 사직2동성당), 김기곤(전주교구 성글라라수도원), 김남오(청주교구 앙성성당), 김병상(인천교구 만수3동성당), 김봉술(전주교구 송천동성당), 김상효(부산교구 덕신성당), 김성용(광주교구 완도성당), 김승훈(서울교구 시흥동성당), 김양희(광주교구 산정동성당), 김영권(광주교구 교육국), 김영욱(인천교구 주안5동성당), 김용원(광주교구 구례성당), 김인국(청주교구 광혜원성당), 김재기(광주교구 두암동성당), 김종걸(광주교구 원동성당), 김종수(광주교구 학운동성당), 김진철(전주교구 소양성당), 김택암(서울교구 문정동성당), 김혁태(전주교구 숲정이성당), 김현영(부산교구 만덕성당), 김홍진(서울교구 발산동성당), 김훈(전주교구 오룡동성당), 나승구(서울교구 평신도사목), 남국현(서울교구 길음동성당), 남승택(광주 가톨릭대 교수), 남학현(서울교구 구리성당), 문규현(전주교구 서학동성당), 문정현(전주교구 오룡동성당), 박기준(전주교구 교육국장), 박기호(서울교구 도림동성당), 박병준(전주교구 동산성당), 박비오(광주교구 노동사목), 박상선(광주교구 압해도성당), 박선용(로마 거주), 박승원(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대표), 박옥규(광주교구 문흥동성당), 박은종(서울교구 잠원동성당), 박인호(전주교구), 박재천(전 천주교도시빈민회 회장), 박종근(전주교구 천호피정의집), 박종탁(전주교구 임실성당), 박창신(전주교구 무주성당), 박창일(인천교구 연안성당), 박창진(광주교구 화순성당), 박청일(청주교구 음성성당), 방의성(전주교구 송학동성당), 배상복(부산교구 사회복지위원회), 배행기(광주교구 신동성당), 서정현(전주교구 효자동성당), 석판홍(부산교구 온천성당), 손덕만(부산교구 용호성당), 송기인(부산교구 교회사 연구소), 송영진(전주교구 전동성당), 신성국(청주교구), 신순근(청주교구 내덕2동성당), 신인용(청주교구 영동성당) , 심용섭(서울교구 아현동성당), 안충석(서울교구 사당동성당), 양경배(전주교구 합열성당), 양석현(전주교구 고산성당), 양요섭(부산교구 반여성당), 오동영(청주교구 오송성당), 오용호(인천교구 가정3동성당), 오정선(전주교구 창인동성당), 윤희동(부산교구 초량성당), 이 동(전주교구 진안성당), 이득재(전주교구 사운성당), 이봉문(광주교구 운남성당), 이부언(광주교구 동림동성당), 이상섭(전주교구 평화동성당), 이상용(전주교구 노원성당), 이상희(광주교구 운암동성당), 이성균(부산교구 반송성당), 이성우(전주교구 화산동성당), 이영선(광주교구 영광성당), 이영우(서울교구 교정사목), 이완재(전주교구 봉동성당), 이재만(부산교구 성지성당), 이재술(광주교구 박림동성당), 이정화(광주교구 광천동성당), 이준오(광주교구 청계성당), 이중섭(청주교구 감곡성당), 이천수(광주교구 강진성당), 이철학(서울교구 평화시장성당), 이태종(청주교구 수곡동성당), 이혁구(전주교구) , 이현로(청주교구), 임병태(광주교구 노안성당), 장루시아수녀, 장세현(광주교구 사목국장), 장용주(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대표, 광주교구 중흥동성당), 전종훈(서울교구 전곡성당), 정승현(전주교구 복자성당), 정진호(서울교구 직장인사목), 정형달(광주교구 문흥동성당), 조성제(부산교구 도시빈민사목), 조성학(청주교구 사회복지국), 조영대(광주교구 북동성당), 조욱종(부산교구 장유성당), 조창현(광주교구 중흥동성당), 주

영돈(부산교구 울산성당), 진용민(광주교구 교구장비서), 차광호(마산교구 교육국장), 최광조(청주교구 증평성당), 최광혁(청주교구 청산성당), 최민석(광주교구 우산동성당), 최상진(인천교구 중동성당), 최이레네 수녀, 최종수(전주교구 금암동성당), 한병헌(전주교구 상삼례성당), 한세종(광주교구 월곡동성당), 한정현(전주교구 원평성당), 함세웅(서울교구 상도동성당), 홍승의(청주교구 학산성당), 황양주(광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광주교구 금호동성당), 이상 함세웅신부 외 124명

개신교(목사)

고영근, 김경남, 김경호, 김관석, 김광수, 김귀동, 김기석, 김기택, 김동완, 김상근, 김성일, 김영주, 김영철, 김재열, 김재일, 김정택, 김종구, 김종채, 김진호, 김태규, 나핵집, 문대골, 문장식, 박경양, 박경조, 박덕신, 박종렬, 박종화, 박형규, 서광연, 손은하, 송유언, 신경하, 신동근, 신동욱, 신익호, 신종선, 오용식, 유원규, 유창복, 윤두호, 윤문자, 윤용웅, 이경춘, 이규상, 이근복, 이대용, 이병창, 이영민, 이영일, 이인규, 이재수, 이정일, 이정학, 이춘섭, 이해동, 이해석, 인원영, 임광빈, 임홍기, 장성룡, 전용환, 정명기, 정상복, 정진우, 정태준, 정해동, 조이제, 조홍벽, 진방주, 차선각, 천용욱, 최완택, 최의팔, 최재권, 추요한, 하태영, 허병섭, 허원배, 홍근수, 김용헌, 황남넉, 강은숙, 김언영, 안기성, 성해용, 이재철, 윤길수, 강우경, 임광빈, 진방주, 정태효, 김혜숙, 박후임, 장창원, 오상열, 김낙경, 이문숙, 황필규, 이경호, 김기석, 박기백, 김명중, 성강수, 송유성, 변기수, 변경수, 이은재, 장석재, 최은식, 김근상, 조성기, 박정진, 김복기(이상 서울)

구행모, 김성북, 김해성, 박봉양, 박영모, 윤기석, 윤길수, 윤문자, 이규학, 이 진, 이해학, 정한식, 최창수, 허춘중, 황규록, 정명기(이상 경기)

권영각, 구기환, 김광재, 김선우, 김영배, 김영윤, 김원진, 김정웅, 김종화, 김최환, 김창규, 김형태, 김태종, 노영우, 노정길, 민홍기, 박만규, 박승휘, 박용래, 박일우, 박찬홍, 박화원, 배영도, 변철규, 서정소, 성귀영, 신동신, 신언석, 안기중, 이도형, 이명남, 이종명, 이충재, 임인수, 임헌재, 장성택, 정지강, 정현근, 조지송, 지철수, 최재권, 최현성, 추교화, 한길동, 허창두(이상 충청)

강원하, 김송달, 김종만, 김종석, 김찬국, 박선호, 손명철, 안상혁, 여윤택, 원기준, 유재무, 이동연, 조화순, 최승렬, 한경호, 한기동, 한석진, 조규백, 백성현(이상 강원)

권헌선, 공명탁, 금창락, 김상천, 김상해, 김영수, 김용환, 김세민, 김진석, 김치영, 김홍술, 문준식, 백낙기, 석준복, 염영일, 오규섭, 원형온, 이동규, 이동원, 이승정, 이종삼, 이천우, 장승현, 전재식, 한기양, 현순호, 현제식(이상 영남)

강신석, 고민영, 김경식, 김동건, 김민해, 김병균, 김성철, 김용대, 김천일, 김현식, 문정식, 박종표, 백남운, 선진영, 신삼석, 오충일, 우영수, 유승기, 이기봉, 이동균, 이동련, 이철우, 임기준, 전병생, 전양권, 정우경, 최희섭, 허종현(이상 호남), 이상 박형규목사 외 248명

학계(교수) 및 학술계

강내희(중앙대), 곽노현(방송대), 김녕(서강대), 김세균(서울대), 김용수(한양대), 김영규(인하대), 김진균(서울대), 김진철(동국대), 남구현(한신대),박거용(상명대), 박상환(성대), 박영근(중앙대), 서관모(충북대), 안병욱(카톨릭대), 오세철(연세대), 유초하(충북대), 장임원(중앙대), 임종대(한신대), 손호철(서강대), 한인섭(서울대), 이세영(한신대), 김홍식(중대), 장근상(중대), 현중식(중앙대), 김순경(중앙대), 공제욱(상지대), 강명구(서울대), 한인섭(서울대),

조희연(성공회신학대), 이해영(한신대), 강치원(강원대), 김상곤(한신대), 김인걸(서울대), 김상조(한성대), 강남훈(한남대), 김수행(서울대), 박정원(상지대), 김성구(한신대), 성염(서강대), 정병철(명지대), 최갑수(서울대), 김선종(성대), 김영수, 조현연, 김태진, 조임숙, 박태호(서울사회과학연구소), 한귀영(서울사회과학연구소), 고훈석(새길 출판사 대표), 김태경(이론과 실천), 이상 김진균교수 외 49명

법조계(변호사)

강금실, 강대성, 고연금, 고영구, 고태관, 김갑배, 김기열 , 김기중, 김기진, 김남준, 김도형, 김동균, 김명한, 김문희, 김병주, 김봉석, 김석연, 김선수, 김우진, 김원근, 김원일, 김원일, 김응조, 김인만, 김인회, 김재영, 김제완, 김종길, 김종률, 김주영, 김주원, 김준곤, 김진국, 김진욱, 김창국, 김춘식, 김칠준, 김한수, 김한주, 김향동, 김현종 김형태, 김호철, 나완수, 남성렬, 노정희, 도건철, 도재형, 라종훈, 문병상, 문병호, 문한성, 민경한, 박교선, 박성민, 박성호, 박세경, 박수근, 박승옥, 박연철, 박영립, 박영배, 박용일, 박원순, 박인구, 박인제, 박재규, 박주현, 박진순, 박헌권, 박형상, 백승헌, 서영섭, 선병주, 손광운, 송두환, 송영길, 송창현, 송해익, 신장수, 신현호, 심규철, 안병용, 안봉진, 안상운, 안영도, 양영태, 양태훈, 안호영, 오세훈, 오승진, 오양호, 오종한, 유남영, 유선영, 유선호, 유 욱, 유중원, 유현석, 유효석, 윤기원, 윤종현, 윤 학, 이경우, 이기욱, 이기영, 이덕우, 이돈명, 이백수, 이병주, 이상경, 이상수, 이상증, 이상호, 이석범, 이석연, 이석태, 이승희, 이양원, 이영직, 이오영, 이용철, 이원영, 이원재, 이유정, 이인호, 이재명, 이정한, 이종걸, 이종필, 이찬진 , 이해진, 이현범, 이형근, 이호일, 이홍식, 이후동, 임영화, 임재연, 임종인, 임채균, 임 호, 임홍종, 장광수, 장완익, 장주영, 장철우, 전병남, 전해철, 정미화 , 정성호, 정연순, 정영원, 정웅태, 정종섭, 정주식, 정태상, 조광희, 조두연, 조병용, 조상희, 조용환, 조준희, 진효근, 차규근, 차병직, 차지훈, 차홍권, 천낙붕, 천정배, 최병모, 최봉태, 최승수, 최영도, 최원식, 최은순, 최일숙, 최재천, 표재진, 하영석, 한승헌, 한이봉, 한정화, 한택근, 황인택, 강동규, 강명득, 강재현, 권오형, 권태하, 김대회, 김상국, 김외숙, 문재인, 박승환, 박윤성, 석진국, 송철호, 윤인섭, 윤여진, 이재호, 장운영, 전극수, 정 운, 정일수, 정재성, 정주석, 정한중, 조성래, 조우래, 조현래, 차정인, 최성주, 이강노, 김용섭, 김귀덕, 남현우, 정덕진, 소삼영, 김연수, 이 현, 송동호, 이현주, 이상 최영도변호사 외 263명

정당의 주민등록 및 주민카드관련정책

새정치 국민회의

질의 1.

內務部는 95年 14代 國會의 마지막 定期國會에서, 住民카드에 대한 言及없이 住民登錄更新費 名目으로 電子住民카드事業에 所要되는 豫算의 承認을 받고, 지난 96年 定期國會의 97年度 豫算審議中 電子住民카드事業에 대한 說明과 豫算內譯을 要求하자 96年度 事業의 繼續임과 이미 300億원을 支出하였다는 理由로 또 다시 豫算承認을 받아 現在까지 電子住民카드事業에 轉用하고 있습니다.

이는 行政府가 國會의 國家豫算統制權(憲法 第54條)을 形式的으로 遵守하면서 實質的으로 違背한 중대한 國民代表機關의 權限 侵害입니다.

이에 대해 貴 黨은 어떠한 措置를 취하였습니까?

<답변>

내무부는 처음에 단순히 주민등록증을 바꾸는 사업이라고 하여 사업 그 자체를 은폐·위장하여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의 지적으로 사업자체에 문제가 있고 또한 법적근거도 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우리 당은 이러한 내무부의 편법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하여 국회에서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관련 예산의 전액삭감과, 법적근거 마련의 필요성 및 사업자체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집중적인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특히, 96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예산심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연속하여 이 문제를 제기하고 예산 삭감과 그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신한국당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얼마전 내무부는 이상의 우리 당 문제점 지적에 뒤늦게서야 관련 법의 개정안, 즉 주민등록법중개정법률안과 인감증명법중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은 제184회 임시국회에서 이를 일방처리하려는 정부·여당에 반대

하여 집중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이를 여론화시키기 위하여 관련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여 국회 내무위 주최로 1997.7.14. 이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하여 국민의 사생활 침해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의 2.

電子住民카드事業은 國家安保와 國家經濟를 危殆롭게 할 수 있으며, 國民의 人權을 침해할 여지가 많은 政策입니다. 電子統制時代의 到來 및 國民의 프라이버시權 侵害를 이유로 本 聯盟을 비롯하여 많은 市民團體 및 社會團體가 公聽會 및 示威를 통해 國益에 反하는 惡法이라고 反對하고 있습니다.

貴 黨에서는 電子住民카드의 施行에 대한 政策的 見解는무엇입니까?

① 計劃補完 施行, ② 積極推進, ③ 全面廢止

細部的으로 그 理由를 說明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內務部에서 立法豫告한 住民登錄法 改正法律에 通過與否에 市民의 耳目이 集中되어 있습니다. 國民과 市民團體의 意見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豫告된 이 法案에 대해서 貴 黨은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답변>

전자주민카드사업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은 반대입니다. 따라서 지금 진행중인 사업을 일단 전면 중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이 사업의 성격 및 내용 등에 대하여 널리 알리고 광범위한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당이 이 사업에 대하여 반대하는 이유는 요약하면,(△사업추진의 법적근거 부재△헌법상 기본권인 국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침해 △정보통제 등 개인 종합정보의 악용우려 △보안·안전 등 기술적 결함 △선진외국 등에 이러한 제도가 없음 등입니다.)

주민등록법 및 인감증명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은 반대입니다. 지난 제184회 임시국회에서도 이의 통과를 강력하게 저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 개정법률이 주민카드사업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질의 3.

住民登錄制度의 導入(1962.5.10. 法律制定)時 現行 憲法 第17條의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에 대한 規定은 없다가 1980年 第8次 憲法 改正時 導入(舊憲法 第16條)되었습니다.

많은 專門家들은 現行 住民登錄法 및 同 改正法律案의 違憲性에 대한 問題提

起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貴 黨의 立場이나 意見는 무엇입니까?

住民登錄法의 全面改正과 現行 住民登錄制度의 修正에 대한 政策的 비젼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답변>

(현행 주민등록제도는 장기적으로 폐지하고 그 대신에 사회보장카드, 의료보험카드 등 국민편의을 위한 관련사항 등만을 수록한 카드를 발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주민등록 제도를 당장에 폐지하면 이에 의거한 각종의 제도, 서식, 관행 등 모든 것을 한꺼번에 고쳐야 되는 엄청난 작업과 이에 따른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이를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질의 4.

現行 住民登錄制度上의 열손가락의 指紋採取와 住民登錄番號의 導入由來 및 背景에 대해 貴 黨의 資料가 있습니까 ?

住民登錄番號에 性, 地域, 生年月日(나이) 등이 나타나 行政上으로 地域主義를 조장하고 憲法 第11條의 平等權에도 위배되고 있습니다.

貴 黨에서 主張하는 地域感情 解消政策과 關聯하여 住民登錄番號의 修正 내지 일련번호제(미국의 사회보장번호 등)의 導入與否와 指紋採取에 대한 意見이나 關聯 政策이 있습니까?

<답변>

지문채취제도는 권위주의와 행정편의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모든 국민을 "범인시"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폐지하고 신속한 범인검거등을 위한 다른 대안을 마련하는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테면, 죄를 지은 사람에 한하여 다른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고, 또 다른 범죄를 범하였을 경우에 이를 신속하게 검거할수 있도록 하는데 한정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체계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준비없이 일시에 현행 제도를 바꾸는 것은 문제가 많으므로 단계적으로 이를 바꾸어야 합니다.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개인에 대한 고유번호체계를 새로이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출신지역 등을 나타내는 번호체계는 시정되어야 합니다.

질의 5.

個人의 프라이버시權保護는 情報化의 時代的 要請입니다. 先進各國에서는 이미